

# 예산총칙

200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3,560,141	18,406,804
일반회계	427,627,027	12,828,811
일반회계	427,627,027	12,828,811
기타특별회계	73,111,851	2,193,356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9,969,092	599,073
주택사업특별회계	2,578,751	77,363
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	3,069,086	92,073
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	4,500	135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	1,000,000	30,000
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	700,000	21,000
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5,214,120	156,424
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5,737,920	172,138
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34,838,382	1,045,151
공기업특별회계	112,821,263	3,384,638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81,960,352	2,458,81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0,860,911	925,82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(해당없음)

제 4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(해당없음)

제 6 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7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,097,59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